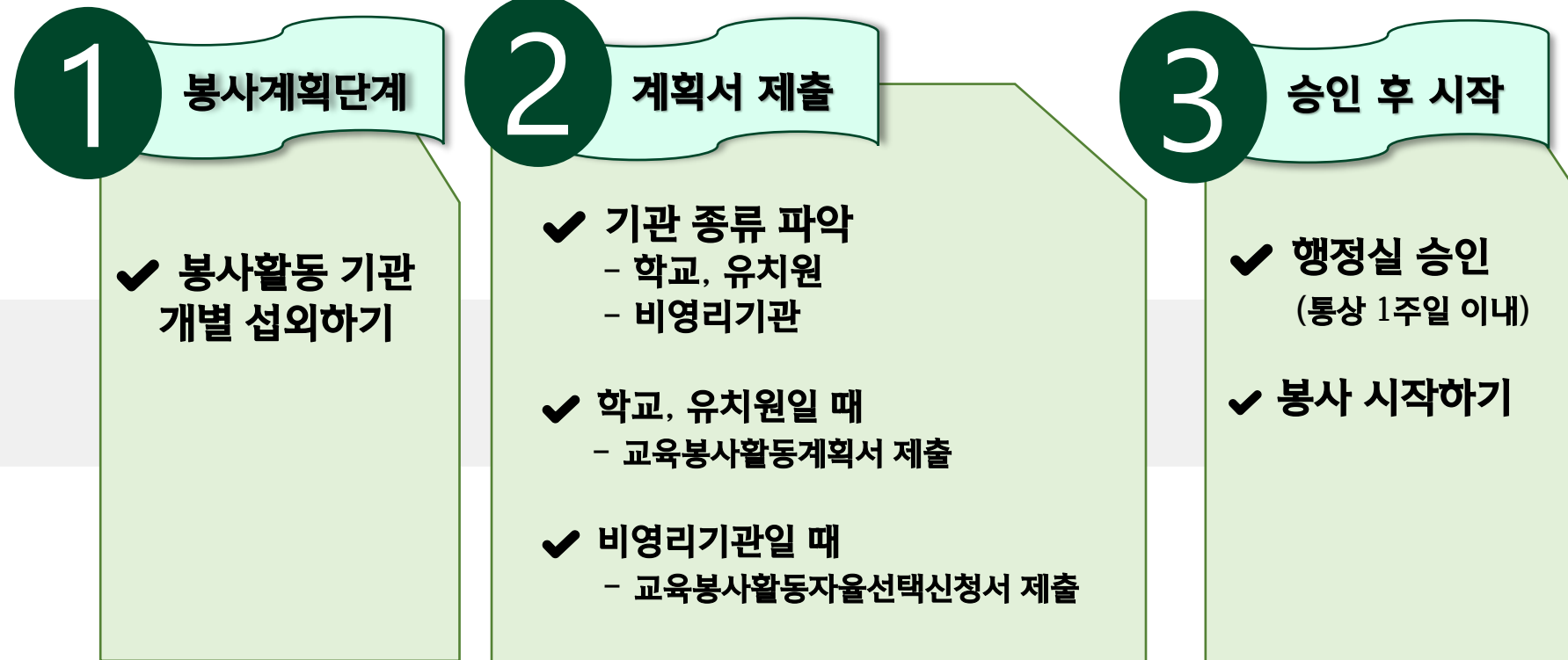


II. 교육실습 I (교육봉사활동) 이수방법



1단계: 교육봉사활동(총 60시간) 실시 및 계획서 사전 제출



II. 교육실습 I (교육봉사활동) 이수방법



계획서의 종류(전국 유,초,중,고등학교)-매일 제출

[서식 1] 교육봉사활동 계획서

교육봉사활동 계획서

교육봉사자 인적 사항	성명		학번	
	대학(원)		학과(전공)	
교육봉사 활동기관	휴대전화		이메일	
	기관명		연락처	
주소	소재지 주소 기입하세요			
	휴대인사 주소 기입하세요			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본교 교직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동행프로그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교육봉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유학기(학년)제 교육봉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(유치원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 외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전적 보상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
	시간	1월 () 시간 / 총 () 시간 예상		
교육봉사 예정활동 내용				
주주의사항	<p>가. 유아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 교육 목적의 무보수 교육 활동을 인정한다. 예) 교과목 학습지도, 진로 및 진학, 학습, 학교 생활에 대한 멘토링,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도, 병학교 방과후 교실 지도,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등. 나. 금식 지도, 야간자율학습 감독, 도서관 장서 정리 등 교육과 직결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. 다. 교육봉사 시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하며, 이동시간, 시간교육 및 준비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시간만을 인정한다. 라. 서울시 동행 프로그램 프로그램, 각종 학교에서의 교과목학습지도, 학기적성지도,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, 초등 돌봄교실, 병학교 방과후 공부방, 체험학습 지원만 인정하며,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단순 업무 보조 등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·학습 활동을 인정한다. 또한 동행 교육봉사활동 실적을 보고 '사회봉사' 과목의 실적으로 이를 활동할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. 마. 봉사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을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. 바. 유교, 초교, 특수(중등 특수 제외)를 제외한 다른 전공 및 학과의 경우 병학교 자유학기(학년)제 교육봉사 활동의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.</p> <p>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오니,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제출일	년	월	일	
신청인	(인)			
* 교육봉사 이수내용이 계획서와 일치해 달라져서 교육봉사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				
허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허가	확인자	사범대학	학과장/지도교수 (인)
	<input type="checkbox"/> 불허		일반대학교/교과장	교직부장 (인)
			교육대학원	부원장 (인)

봉사기관이 전국 유,초,중,고등학교인 경우

➤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목록

- 『유아교육법』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
-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
- 각종학교, 고등기술학교, 산업체 부설 중, 고등학교
-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의한 ' 각종학교 ' 로 인가된 대안학교, 외국인학교
- 타 법령에서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



II. 교육실습 I (교육봉사활동) 이수방법



계획서의 종류(비영리기관: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인정 7곳)-행정실 방문, 등기 제출

1

1-1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(학교 외 기관에서 봉사할 경우)

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

수강 학기	학년도	학기	신청일자	년	월	일
학과 (전공)	대학원		학과	전공		
이름			학번			
연락처	집 :	핸드폰 :	e-mail :			
봉사 기관 관련 사항	봉사 기관명	대표자	설립 연도	운영주체	주요사업	
	전화번호	주소 (우편번호 -)		Fax번호		
	기관 담당자 확인	직책 :	전화번호 :	성명 :	(인)	
	*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의 교육봉사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할 담당자의 날인을 받으십시오.					
봉사 활동 관련 사항	① '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'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명 서류(예: 기관 신고발동 허가증 등) ③ 해당 기관의 개요(예: 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, 기관 공식홈페이지 등)					
복수의 사항	심의대상 여부	대상 ()	비대상 ()	심의결과	기 ()	부 ()
	심의자	사범대학	학과장/지도교수	(인)		
		일반대학	교직과정	교직부장 (인)		
		교육대학원	위원장	(인)		

접수 NO. _____ **교육봉사활동 접수확인서**

수강 학기	학년도	학기	신청일자	년	월	일
학과 (전공)	학번		이름			
교육봉사 기관명	교육봉사 활동명		심의대상 / 비대상			

* 유의사항 : ① ※ 표시 부분은 수강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 ② 신청서 접수 시에 접수확인서를 꼭 받아가십시오.
 ③ 수강학기: "교육실습 I" 교과목 수강학기 또는 수강 예정 학기임.

2

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

1. 교육봉사활동대상

교육봉사기관명	
교육봉사기간	년 월 일 - 년 월 일

2. 교육봉사활동내용

프로그램명	
프로그램 내용	
봉사활동 세부내용 (봉사지활동내용)	
봉사활동 요일/시간	

3.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 인정 지침

가.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으로 적격한 기관은 <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>으로서,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하며, 반드시 교육봉사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봉사지도자(슈퍼바이저)가 있어 교육봉사자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.

나. 기관 선택 후에는 기관 및 활동이 '교육봉사'에 적합한 것인지를 밝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심의 담당자(사범대-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/ 일반대학 교직과정 - 교직부장 / 교육대학원 -부원장)에게 제출합니다. 해당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'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'
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명 서류
 ③ 해당 기관의 개요(예: 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 또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)

다. 심의 결과 '승인'이면 봉사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, '반려'이면 다른 적격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.



비영리기관 봉사 가능 기관 목록

-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
-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
- 이대복지어린이집
- 서대문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
- 성산종합사회복지관
- 고척도서관
- 노원평생학습관

